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동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5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김동욱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문성호,
박강산, 윤기섭, 윤종복,
이봉준,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춘대,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최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체를 통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 비대칭, 계약 절차 불투명, 환불·해지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결혼준비대행업은 여러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연계·제공하는 특성상 분쟁 발생 시 소비자 대응이 어려우며, 시장의 신뢰성 저하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분쟁 예방, 민원 처리 등 소비자 보호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다.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운영과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라. 실태조사와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준비대행업”이란 예식장 대관, 예복 임대, 웨딩촬영, 메이크업 및 헤어 연출 등 결혼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일정 기획, 서비스 연계 또는 대행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표준계약서”란 결혼준비 관련 서비스 이용 시 공정한 계약 체결과 분쟁 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결혼준비대행업의 운영 실태, 거래 관행 및 관련 제도 개선

3. 소비자 보호 및 피해 예방, 정보제공 기준 정립, 계약 절차 개선
4. 거래 기준의 표준화, 표준계약서의 활용 및 자율규제 기반 조성
5. 그 밖에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소비자 보호) 시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의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해지 조건, 분쟁 사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체계 마련
2.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안내 및 활용 촉진
3. 민원 접수 및 분쟁 해결 절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운영과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표준계약서 활용 촉진 및 거래 절차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자율규제 확산과 민간 차원의 자정 노력 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
3.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안내 사업

4. 결혼준비대행업의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5조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현황 및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자치구, 관계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통상 기본계획은 내부인력을 활용하여 수립하므로 해당규정에 의한 직접적 비용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2	제5조(소비자 보호)	△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사업의 경우 서울시 관련부서 각종 문서 확인결과 기추진 ¹⁾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별도의 개별사업으로 추진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해당사업은 추진 형태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는 현재로서는 객관적 추계가 곤란
3	제6조(지원사업)		
4	제7조(실태조사)	△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나,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객관적 추계가 곤란 ⇒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자체 추정 또한 곤란
5	제7조(협력체계 구축)	×	협력체계 구축은 통상 별도의 비용 ²⁾ 을 수반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① 안 제6조(지원사업)을 근거로 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사업비용은 현재 정책적(추진여부, 규모, 형태 등)으로 정해진 바 없어 객관적 추정이 곤란함

【참고】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 확대되는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사업 비용을 추정하려면 개별사업의 추진 형태 설정이 전제되어야 함
- 특히 홍보(홍보물 제작, 누리집 게시 등), 인식개선 사업은 추진형태에 따라 소요비용 차이가 크므로 현시점에서 수집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소요비용을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기추진사업] 서울시 민생노동국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운영> : 269,065천원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소비자 권익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110선과 소비자 유의사항>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결혼준비 절차 및 계약관련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볼 경우 기추진 사업으로 판단됨
⇒ 그러나 향후 교육·홍보 등을 위해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2) [재정소요 영향 미미] 협력체계 구축(Ex. 업무협조 MOU)은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일회성 소액지출인 경우가 많아 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Ex. 현수막, 입간판, 업무 협약서 제작 등)되므로 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② 안 제7조(실태조사)의 서울특별시 자체의 결혼준비대행업 현황 및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실태조사 비용은 현재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객관적 추정이 곤란함

[참고]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실태조사의 경우 국가단위 유사 실태조사³⁾가 진행된 바 있어 향후 서울시 차원 별도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한다면, 우선 조사의 실효성, 중복성, 예산낭비 여부에 대한 고려와 함께 보다 면밀한 조사규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단위 실태조사와 조사항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경우 서울시 차원 조사가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만일 조사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규모 적정성 검토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현재로선 자체 추정 또한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당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3)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참고용으로 제시함

① 기획재정부 「결혼서비스 실태조사」

- 소비자 조사, 플랫폼에서 공개한 가격 수집 조사, 미스터리 쇼핑, 신부·신랑 면담, 결혼서비스 업계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결혼시장 현황과 소비자 인식에 대해 정리한 자료

② 한국소비자원 「결혼서비스 가격조사」

- 결혼식장 및 스텝 패키지 2025년 4월 계약금액, 선택품목 가격 등을 조사원이 방문·면접조사하여 지역별 결혼서비스 가격을 정리한 자료로 2025년 5월 첫 공개 후 향후 매월 조사하고, 격월 단위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https://www.price.go.kr>) → 서비스가격정보 → 결혼서비스(지역별 가격정보) 참조

[결혼식장 필수품목별 중간가격 현황]

구분	대관료(만원)	식대	
		총액(만원)	1인당(원)
전국	300	1,183	58,000
서울(강남)	700	2,200	85,000
서울(강남 외)	550	1,600	75,000

주 : 소비자원 보도자료 일부 발췌

[지역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중간가격 현황]

구분	(단위 : 만원)														
	강남	강남 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스튜디오	150	129	130	130	140	125	150	130	100	100	109	130	159	113	
드레스	205	110	178	145	150	222	148	137	154	142	120	132	137	140	
메이크업	99	61	77	72	44	61	32	74	85	72	58	78	37	44	

자료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소비자원, 결혼서비스 가격 첫 공개, “내 지역 결혼비용은 얼마일까?”」, 2025. 5. 28.